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, 인터넷에서 「파인」 두 글자를 쳐보세요

"금융은 튼튼하게, 소비자는 행복하게"

보 도 자 료

보도	2017. 8. 7.(월) 조간	배포	2017. 8. 4.(금)

담당부서	회계제도실 한국회계기준원	윤동인 실장(3145-7750), 윤정숙 팀장(3145-7980) 박세환 실장(6050-0168), 양정아 팀장(6050-0163)

제 목 : D-5개월, 새로운 수익 회계기준 시행에 대비하세요!

- 2018년 시행, K-IFRS 제1115호(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) 관련

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은 시행 5개월을 앞둔 새로운 수익 회계기준 내용이 "매출"인식과 관련되어 있어 상장법인 등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으므로 실무자뿐만 아니라 경영진도 관심을 갖고 철저히 대비하도록 권고

Ⅰ 새로운 수익 회계기준(이하 '新수익기준') 개요

1 新수익기준 개요

□ **'14.5월** 국제회계기준위원회(이하 'IASB')는 현행 수익회계 기준서* 및 해석서**를 **전면 대체**하는 **IFRS 15**(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)를 **제정**

* 기준서 : 제1018호(수익), 제1011호(건설계약)

** 해석서 : 제2031호(수익: 광고용역의 교환거래), 제2113호(고객충성제도), 제2115호(부동산건설약정), 제2118호(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)

○ IASB와 미국회계기준위원회(이하 'FASB')는 광범위한 거래와 산업에 적용되는 **하나의 통합된 수익 기준서**를 개발*

* 종전 규정의 비일관성과 취약점을 없애고 수익 정보를 충실히 공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IASB와 FASB는 '02년부터 기준 합치를 위한 공동프로젝트를 시작

□ 국내에서도 **'15.11월 K-IFRS 제1115호**가 **제정**되어 상장법인 등 **IFRS 적용기업**은 **'18년**부터 이를 **의무적용** 해야 함

2 新수익기준 주요 내용

□ **모든 유형**의 계약에 공통 적용되는 **새로운 수익인식모형**을 제시

○ **(현행) 거래 유형별***로 수익인식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일관성이 부족하고, 복잡하거나 진화하는 거래에는 적용하기 어려움

* 재화의 판매, 용역의 제공, 이자수익, 로열티수익, 배당수익, 건설계약

○ **(新기준)** 고객과의 **모든 유형**의 계약에 적용되는 **5단계 수익인식 모형**을 제시하여 재무제표의 **비교가능성**과 수익인식의 **일관성 제고**

(사례) 고객에게 기계장치를 이전하면서 기계 설치용역, 일정 기간 동안 기술지원 용역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

① 고객과의 계약을 식별

: 당사자들이 상업적 실질이 있는 계약을 승인하고, 이전할 재화나 용역과 관련된 당사자의 권리 및 지급조건을 식별할 수 있으며, 대가의 회수가능성이 높은지 등 고객과의 계약이 K-IFRS 제1115호 적용범위에 포함되는지를 식별

② 수행의무를 식별

: 고객과의 계약은 다음의 세 가지 약속으로 구성
(1) 기계장치 판매
(2) 설치용역
(3) 기술지원

(1)~(3) 약속이 각각 구별된다면 별개의 수행의무로 보아 회계처리

③ 거래가격을 산정

: 고객으로부터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가를 산정
(할인, 환불, 장려금 등 약속한 대가의 변동 가능성을 고려)

④ 거래가격을 계약 내 수행의무에 배분

: ③에서 산정한 거래가격(2,000으로 가정)을 ②에서 식별한 각 수행의무의 개별 판매가격에 비례하여 배분

수행의무	개별 판매가격	거래가격의 배분
(1) 기계장치 판매	1,500	1,000
(2) 설치용역	600	400
(3) 기술지원	900	600
계	3,000	2,000

⑤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(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) 수익을 인식

: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④에서 배분된 거래가격을 수익으로 인식
(예: 기계판매시 1,000 인식, 설치시 400 인식, 기술지원 기간에 걸쳐 600 인식)

Ⅱ 新수익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

계약에 포함된 여러 가지 약속들이 구별된다면 각각의 약속(수행의무)에 대하여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회계처리 해야 함

자료이용시 유의사항

新수익기준 적용시 달라질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예시*이며, 기업들은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新수익기준 적용으로 인한 영향이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함

* 예시된 내용 이외에도 新수익기준 적용으로 인하여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음

1 현재가치 고려

□ **(주요 내용)** 선불거래, 후불거래 등 재화나 용역의 **이전시점**과 **대가 지급시점**의 **차이**로 인하여 **유의적인 금융효과**가 발생하는 경우 **거래가격**은 **화폐**의 **시간가치**를 반영하여 산정

※ 현행 기준은 판매대가의 유입이 이연되는 경우(후불거래)에 대하여 화폐의 시간가치 반영을 요구하나, 선불거래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음

○ 다만, 기업이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간의 기간이 **1년 이내**인 경우에는 수익 금액을 조정하지 않을 수 있는 **실무적 간편법** 사용 가능

(참고) 유의적인 금융요소 회계처리 사례 (K-IFRS 제1115호 적용사례 29)

(사례) 2년 뒤에 고객에게 자산에 대한 통제가 이전되는 계약에서 고객은 (1) 2년 후 5,000원을 지급하거나, (2) 계약시 4,000원을 지급하는 방법 중 (2)를 선택, 계약에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어 있고, 이자율은 6%라고 판단하는 경우

계약시:	(차) 현금	4,000	(대) 계약부채	4,000
1년후:	(차) 이자비용	240*	(대) 계약부채	240
2년후:	(차) 이자비용	254**	(대) 계약부채	254
자산이전시:	(차) 계약부채	4,494	(대) 수익	4,494

* 4,000×0.06=240
** 4,240×0.06=254

2 반품 회계처리

□ **(주요 내용)** 반품권이 있는 판매의 경우 반품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및 그 원가를 **환불부채** 및 **자산(반환제품회수권)**으로 **각각 총액 표시**

※ 현행 기준에는 반품권이 있는 판매에 대한 구체적 회계처리 지침이 없음

○ **현행** 기준에서 **순액**으로 **반품충당부채**를 표시하였다면 **新기준**에서는 **자산**과 **환불부채**를 **각각 총액**으로 **표시해야** 하므로 **자산**과 **부채**의 금액이 **증가**할 수 있음(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)

(참고) 반품 회계처리 사례 (K-IFRS 제1115호 적용사례 22)

(사례) 기업은 고객들과 100건의 계약(100개 × 100원 = 총 대가 10,000원, 원가는 각 60원)을 체결, 고객이 30일 이내에 반품하면 전액을 환불, 기댓값 방법을 사용하여 97개의 제품이 반환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

현행 실무*		新수익기준	
(차) 현금 10,000	(대) 매 출 9,700** 매출원가 180*** **반품충당부채** 120****	(차) 현금 10,000	(대) 매출 9,700 **환불부채** 300*
(차) 매출원가 6,000	(대) 재고자산 6,000	(차) 매출원가 5,820** **반환제품회수권** 180***	(대) 재고자산 6,000

* 현행 기준상 세부 회계처리지침이 없어 대부분 반품충당부채를 순액으로 표시하나, 총액으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음
** 97개×100원=9,700원
*** 3개×60원=180원
**** 3개×(100원-60원)=120원

* 3개×100원=300원
** 97개×60원=5,820원
*** 3개×60원=180원

※ 손익영향: 9,700-(6,000-180)=3,880

※ 손익영향: 9,700-5,820=3,880

3 라이선스 수익

□ **(주요 내용)** 新수익기준은 **라이선스 수익***의 **인식시점**에 대하여 현행 기준보다 **상세한 지침**을 제시

* 소프트웨어, 영화, 음악, 특허권 등 기업의 지적재산을 고객에게 부여하는 대가로 수령하는 수익

※ 현행 기준은 라이선스 수익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음

○ 고객에게 부여한 라이선스가 '기업의 지적재산에 **접근할 권리***'이면 라이선스 **기간에 걸쳐** 수익을 인식하고, '기업의 지적재산을 **사용할 권리****'라면 라이선스를 **부여하는 시점**에 수익을 인식

* 예) 기업은 연재만화 속 캐릭터의 이미지(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속 발전)와 이름을 고객에게 4년 동안 사용하도록 라이선스(K-IFRS 제1115호 적용사례 58 참조)

** 예) 기업은 유명 오케스트라의 교향곡 녹음판을 고객에게 라이선스하고, 고객은 2년 동안 녹음된 교향곡을 사용할 권리를 보유(K-IFRS 제1115호 적용사례 59 참조)

4 총액인식 對 순액인식

□ **(주요 내용)** 기업이 **본인**임을 **판단**하는 **원칙***을 제시하고, 현행 기준에서 '**본인****'임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였던 '**신용위험 부담**' 지표를 **삭제**

*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이 이전되기 전에 기업이 그 정해진 재화나 용역을 통제

** 기업이 본인으로 거래한 경우 총액으로 수익을 인식, 대리인으로 거래한 경우 순액으로 인식

※ **본인 對 대리인 판단지표 비교**(본인임을 나타내는 지표)

	현행 수익기준	新수익기준
(1) 약속 이행의 주된 책임을 부담	O	O
(2) 재고위험을 부담	O	O
(3) 가격결정 권한을 보유	O	O
(4) 고객의 신용위험을 부담	O	**삭제***

* 현행 기준에서 "신용위험 부담"을 주요 지표로 하여 '본인'으로 판단한 경우, 新기준 적용시 '대리인'에 해당할 수 있음

5 진행기준 적용 판단기준

□ **(주요 내용)** 다음 **세 가지** 요건 중 **하나**를 충족하면, 기간에 걸쳐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**진행기준 적용 대상**에 포함됨

※ 현행 기준은 요건을 충족하는 건설계약, 용역의 제공 등이 진행기준 적용대상

新수익기준의 진행기준 적용요건(K-IFRS 제1115호 문단 35)

(1) 고객은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(예: 청소용역)

(2) 기업이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그 자산을 통제(예: 고객의 소유지에서 제작하는 자산)

(3) 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,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음(예: 주문 제작 자산)

6 보증 관련 회계처리

□ **(주요 내용)** 제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**별도의 수행의무**로 구분되는 **보증**을 제공하는 경우, **판매금액**의 **일부**를 **보증**에 **배분**하고 관련 수익은 **보증기간**에 **걸쳐 인식**

※ 현행 실무는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보증비용을 충당부채로 인식

新수익기준의 보증 관련 규정(K-IFRS 제1115호 문단 B28~B33)

○ 기업이 약속한 **보증**은 **확신 유형**과 **용역 유형**으로 구분

① **확신 유형**(assurance-type): 관련 제품이 합의한 요구조건에 맞으므로 의도한 대로 작동할 것이라는 **확신**을 고객에게 줌

☞ *보증을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하지 않으므로* ***거래가격에 영향 없음***

② **용역 유형**(service-type): 제품이 합의한 요구조건에 맞는다는 확신을 주는 것에 **더하여** 고객에게 **용역**을 제공

☞ *보증을* ***별도의 수행의무로*** *식별하여* ***거래가격의 일부를 보증에 배분***

Ⅲ 도입준비상황 및 주요 영향 주석공시

K-IFRS 제1008호(회계정책,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)에 따라 기업들은 新수익기준 도입 준비상황과 주요 영향에 대한 정보를 주석 공시해야 함

□ **금융감독원**은 기업들이 **주석 공시 의무**에 대하여 **인지**하고, 작성시 **참고**할 수 있도록 **'17.1.3.「주석공시 모범사례*」**를 **마련 · 배포**함

* '新 IFRS 시행 준비, 금감원 모범사례를 활용하세요' ('17.1.3., 금융감독원 보도자료) 참조

□ **'17년 반기재무제표 주석** 작성시에도 新수익기준 도입 준비상황과 주요 영향에 대한 정보를 **충실히 기재해야 함***

* 상장법인, 회계법인 등에 대하여 주석공시 안내 공문 발송('17.4월 및 '17.7월)

※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법인 약 1,800사의 2016년 재무제표를 모니터링한 결과, 新수익기준 적용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비 평가를 완료하였다고 공시한 기업은 10개사 미만에 불과

Ⅳ 정착지원활동 경과 및 향후 계획

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은 '17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기업들의 도입 준비를 독려하고, **교육 · 홍보 활동**을 강화하여 新수익기준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

□ **(정착지원활동 경과)** 금융감독원과 **회계기준원**은 상장법인 등이 新기준 도입을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**'14년**부터 **설명회, 정착지원 T/F*** **운영, 업종별 간담회 실시** 등 **다양한 정착지원활동**을 **수행**해 옴

* 기업의 新수익기준 도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'16.8월 한국회계기준원에 설치
T/F 회의 논의내용은 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 게시(www.kasb.or.kr, 「소통광장-공지사항」)

□ **(新수익기준 설명회 예정)** 新수익기준의 **내용** 및 **실무 영향** 등에 대하여 **상장법인 실무자** 등을 대상으로 **설명회*** 및 **기준서 교육**** 실시

* (금융감독원) '17.10월~11월 예정, 세부 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별도 안내
** (회계기준원) '17.9.27., 10.30., 11.14. 오프라인 교육, '17년 말(또는 '18년 초) 온라인 교육 제공 예정[회계기준원 교육포털(edu.kasb.or.kr) 참조]

□ **(新수익기준 홍보책자 발간 예정)** 금융감독원은 상장법인 실무자 등이 新기준의 **내용** 및 **재무제표**에 미치는 **영향** 등을 **쉽게** 이해할 수 있도록 "알기 쉬운 新수익기준(가칭)"을 **발간**하여 **배포**('17.10월~11월)

□ **(정착지원활동 강화)** 회계이슈사항*에 대하여 **정착지원 T/F** 등에서 **논의**하여 新기준이 **원활히 정착**될 수 있도록 **적극 지원**

* 新수익기준 관련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적극 알려주시기 바람
-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국제회계기준팀(02-3145-7980, 7982, 7984)
- 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제3팀(02-6050-0163, 0174, 0155)
- 회계기준원 홈페이지 「제개정과제-의견조회-정착지원 T/F 논의이슈 제출」활용

□ **(감독업무에 활용)** 필요시 新기준 **도입 관련 주석공시** 및 **도입 이후 수익 회계처리**의 **적정성** 등을 **점검**하여 **감리업무** 등에 반영

(붙임) 新수익기준(K-IFRS 제1115호) 정착지원활동 경과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http://www.fss.or.kr)

(붙임)

新수익기준(K-IFRS 제1115호) 정착지원활동 경과

□ **금융감독원**과 **회계기준원**은 상장법인 등이 **新수익기준** 도입을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'14년부터 **정착지원활동**을 **수행**해 오고 있음

○ K-IFRS **제·개정 설명회, 기준서 교육** 등을 통하여 新수익기준의 **주요내용** 및 **사전 준비 필요성** 등을 **전파**해 왔으며,

○ 기업의 新수익기준 도입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9인의 위원과 다수의 참관인으로 구성된 「**IFRS 15 정착지원 T/F***」를 **설치**하고,

* 기업의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회계기준원에 설치
구성: 위원[9인, 교수(위원장), 금융감독원, 기업(3사), 회계법인(4사)], 간사[회계기준원]
참관인[한국상장회사협의회, 코스닥협회, 대한건설협회 2인, 한국공인회계사회 등]

- 정기적으로 **T/F 회의**를 **개최**하여 도입시 예상되는 수익인식 이슈에 대하여 논의해 오고 있음

□ 또한, **금융감독원**은 **건설·조선·유통·제약** 등 주요 업종에 대한 **업종별 실무자 간담회**와 **회계법인 간담회**를 **실시**하여 **애로사항**을 **청취**하고 관련 **회계이슈**를 **파악**해 왔으며,

○ **상장법인, 회계법인** 등에 대한 **공문*** **발송** 등을 통하여 **新수익기준 내용** 및 **도입준비 필요사항**을 **지속적**으로 **전파**해 오고 있음

* 한국상장회사협의회, 코스닥협회,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이 전파에 협조

□ **'17년 하반기**에는 **新수익기준 내용** 및 **실무영향** 등에 대한 **설명회 개최, 기준서 교육, 홍보책자 발간** 등 **교육·홍보 활동**을 **강화**할 예정

新수익기준 관련 정착지원활동 경과

구 분	주 요 내 용
설명회 개최(3회)	▫ K-IFRS 제·개정 설명회('14년 1회, '15년 1회, '16년 1회)
기준서 교육(11회)	▫ K-IFRS 제1115호 교육('14년 2회, '15년 4회, '16년 2회, '17년 3회)
간담회 실시(7회)	▫ IFRS 관계자 간담회('15.11월) ▫ 건설업계 실무자 간담회(2회, '16.12월, '17.3월) ▫ 조선·유통·제약업계 실무자 간담회(3회, '17.5월~6월) ▫ 회계법인 간담회('17.4월)
정착지원 T/F(10회)	▫ T/F회의 개최('16년 4회, '17년 6회)
보도자료 배포(7회)	▫ 기준서 및 준비 관련사항 등('15년 1회, '16년 4회, '17년 2회)

정착지원 T/F 회의 실시 현황

회차	일 자	논 의 주 제
1차	'16. 8.17	▫ Kick Off 미팅, 향후 진행 방향, 관련 이슈 공유
2차	'16. 9.23	▫ 자체분양공사, 선박건조계약
3차	'16.10.28	▫ 상품권 할인판매, 라이선스
4차	'16.12.16	▫ 산업용지 분양, 품질보증 등
5차	'17. 1.20	▫ 적자공사, 진행률 산정
6차	'17. 2.24	▫ 자체분양공사 수익 인식 관련
7차	'17. 4.21	▫ 자체분양공사 수익 인식 관련
8차	'17. 5.23	▫ 독점판매권 수익인식, 할인쿠폰 회계처리
9차	'17. 6. 9	▫ 선분양아파트공사 지급청구권 검토, 포트폴리오 접근법 및 진행률 측정
10차	'17. 7.14	▫ 적자공사의 진행기준 적용요건, 공사손실충당부채, 선박매출의 진행기준 적용요건, 유의적인 금융요소 등

(참고) 보도자료 목록

- 2018년부터 수익과 금융상품 관련 회계기준이 확 바뀝니다('15.12.16)
- 국제회계기준 정착지원 T/F 구성(회계기준원, '16.7.20)
- 2017년 4대 중점 회계감리분야 안내('16.12.23)
- 新국제회계기준 시행 관련 기업 및 외부감사인 유의사항('16.12.26)
- 2016년 결산시 회계관련 유의사항 안내('16.12.30)
- 新 IFRS 시행 준비, "금감원 모범사례를 활용하세요"('17.1.3)
- 새로운 수익 기준서(K-IFRS 제1115호) 정착지원 경과 및 향후 계획('17.2.15)